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0825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장△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외 1인

판 결 선 고 2011. 1.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소기업 등을 위한 채무보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신용보증기관으로서, 위 법에 의한 신용보증업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신용보증규정은 특정된 하나의 채무에 대하여 건별로 하는 보증인 ‘개별보증’과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속적인 상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특정의 대금지급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인 ‘근보증’을 구분하여 이들을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다(신용보증규정 제3조 제4호, 제5호). 한편 별도의 대출 관련 서류 없이 통장의 인출청구서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출 및 입금을 함으로써 수시로 대출한도액 범위 안에서 자동으로 대출 및 상환이 이루어지는 대출방식인 ‘예금통장에 의한 자동대출’이나 ‘한도거래방식으로 운용되는 대출’은 근보증 대상 채무로 분류되어 있다(위 규정 제38조 제1항 제1호).

피고는 2005. 8. 25. “피보증인 ○○엔지니어링(대표자 소외인), 신용보증원금 1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06. 8. 24.[이후 2차에 걸쳐 2008. 8. 22.로 연장되었다],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2억 원, 부분보증비율 85%”로 한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첨부된 ‘신용보증약관(개별보증용)’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된 최초의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하고(신용보증약관 제3조 제3항), 이에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면책기준에 따라 보증책임이 면제된다(위 약관 제18조 제4호, 제19조).

그런데 원고는 2005. 8. 30. 위와 같이 보증방법이 ‘개별보증’으로 명시된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인에게 대출을 하면서 소외인과 사이에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수시로 대출 및 상환이 가능한 ‘기업종합통장 자동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아가 원고가 작성·관리하는 신용보증계좌원장에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방법을 ‘근보증’으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 후 피고에게 송부한 보증부대출실행통지서에는 이 사건 대출의 보증방법을 ‘개별보증’이라고 기재하였다(피고의 보증기한 연장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기한을

연장한 후 송부한 신용보증조건변경실행통지서에도 마찬가지로 ‘개별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소외인은 위 대출약정에 따라 2005. 8. 30.에 589,990원을 대출받은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2006. 1. 14.까지 199,813,746원을 대출받았고(그 중 일부는 이자 지급을 위한 자동대출이다), 이후 2006. 1. 25.부터 2008. 4. 1.까지 대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이자 상당액만을 입금하여 오다가 이후에는 이마저 입금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08. 8. 20. 피고에게 보증채무이행청구를 하면서 처음으로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계좌원장 등 이 사건 대출 관련 서류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대출관련 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이 근보증의 대상인 예금통장에 의한 자동대출 방식으로 실행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가 개별보증을 근보증으로 취급한 것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3조 위반으로 같은 약관 제18조의 면책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문언대로 개별보증을 할 의사이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신용보증을 한 피고의 의사는 이 사건 대출에 따라 최초로 인출하는 대출금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만 신용보증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대출의 연장된 대출기한 만료시의 잔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의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을 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하여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앞서 본 대로 피고는 전문 신용보증기관으로서 개별보증과 근보증을 달리 취급하고 있고, 이 사건 신용보증서상 보증조건이 개별보증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첨부된 신용보증약관 역시 개별보증용임이 명백하다. 반면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근보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착오로 개별보증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이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신용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전문 금융기관으로서 개별보증과 근보증의 차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을 함에 있어서 임의로 개별보증조건에 위반하여 근보증의 대상인 이 사건 대출을 한 다음 내부적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보증방법을 근보증으로 처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대출 및 이후의 대출기한 연장의 각 과정에서 보증조건에 위반된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피고의 동의를 받거나 추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의 보증방법에 관하여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문언 내용에 따라 개별보증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와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14836 판결 참조).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의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문언과 달리 근보증을 할 의사이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쳐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취지는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창수